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80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47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5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고시 제2021-1호 급수구역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2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결정(안) 공고·열람 ····· 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 1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27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2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6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고·열람 ··· 2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9호 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재공고·열람 ·····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41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공고・열람 ·····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46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54호 도시계획시설(관청근린공원 1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 3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7호선, 대1-20호선, 대3-112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 4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421호 손실보상계획공고 ····· 48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3호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5호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59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6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36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36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 87

회 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47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대이작파일럿부두지구 내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032-440-481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연월일 : 2021.10.25.(최초승인:2020.8.31.)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장정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3. 매립목적 : 공공시설용지(주차장)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760-4 ~ 760-9번지 일원 공유수면
   ㅇ 면적: 1,800㎡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20. 8. 31. ~ 2022. 6. 30.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ㅇ 변경사유: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 당초: 2020. 8. 31. ~ 2021. 6. 30. ⇒ **변경: 2020. 8. 31. ~ 2022. 6. 30.**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게재 생략

[별첨]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변경) 승인조건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5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2),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1. 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항	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53,157,186.9	증)9,581.5	53,166,768.4	건설부고시 제1992-841호 (1993. 1. 6.)	

○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항 (국제공항)	• 면적 변경 53,157,186.9㎡ → 53,166,768.4㎡ (증 9,581.5㎡)	• 제2여객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건설에 따른 항공전파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확충 (오성산 관제수신소 시설공사)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고시 제2021-1호

급 수 구 역 고 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6월 15일 고시한 기존 급수구역에 다음 지역을 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1. 급수구역(추가)

(단위 : ㎢)

연번	구역	위 치	면적	세대	인구	확대사유	비 고
		합 계	59.165	5,788	12,307	신규수요 및 기존공급	
1	중구 (0.55)	무의동 278-11 번지 일원	0.55	90	189	신규수요	무의도
2	강화군 (58.615)	강화읍 월곳리 77-1 일원	0.406	146	327	기존공급	강화도
3		강화읍 월곳리 750-5 일원	0.966	346	778	〃	〃
4		강화읍 옥림리 37-3 일원	0.914	328	737	〃	〃
5		강화읍 갑곳리 1081-1 일원	0.178	56	128	〃	〃
6		강화읍 남산리 319-1 일원	0.079	28	64	〃	〃
7		강화읍 국화리 산224 일원	0.176	73	163	〃	〃
8		강화읍 국화리 산138-1 일원	0.209	109	245	신규수요	〃
9		강화읍 대산리 1286-2 일원	0.163	73	163	기존공급	〃
10		길상면 동검리 87 일원	0.293	30	61	〃	〃
11		길상면 초지리 1225-4 일원	0.013	1	2	〃	〃
12		길상면 길정리 591-7 일원	0.399	40	81	〃	〃
13		길상면 선두리 808 일원	0.07	7	14	〃	〃
14		길상면 선두리 956-23 일원	0.369	37	75	〃	〃
15		길상면 온수리 160-96 일원	0.102	25	50	〃	〃

16		길상면 온수리 169-19 일원	0.16	16	32	〃	〃
17		길상면 온수리 296 일원	0.109	11	22	기존공급	강화도
18		길상면 온수리 409-40 일원	0.127	13	25	〃	〃
19		길상면 장흥리 산15 일원	0.181	18	36	〃	〃
20		길상면 장흥리 223-67 일원	2.038	202	410	〃	〃
21		길상면 장흥리 388-11 일원	0.109	11	22	〃	〃
22		길상면 초지리 275-1 일원	0.24	24	48	〃	〃
23		길상면 초지리 944 일원	0.603	60	121	〃	〃
24		내가면 외포리 404 일원	0.174	11	18	〃	〃
25		내가면 외포리 582-1 일원	0.284	17	30	〃	〃
26		내가면 황청리 846-38 일원	0.028	13	22	〃	〃
27		내가면 황청리 755 일원	0.068	8	15	〃	〃
28		내가면 황청리 644 일원	0.004	4	8	〃	〃
29		내가면 황청리 508-17 일원	0.102	8	15	〃	〃
30		내가면 구하리 257 일원	0.448	27	47	〃	〃
31		내가면 오상리 643-2 일원	0.314	27	47	〃	〃
32		내가면 오상리 220-2 일원	0.887	53	92	〃	〃
33		내가면 고천리 1198 일원	1.25	78	135	〃	〃
34		내가면 고천리 701-32 일원	0.058	8	15	〃	〃
35		내가면 고천리 418 일원	0.027	18	31	〃	〃
36		내가면 고천리 127 일원	0.263	18	31	〃	〃
37		불은면 삼성리 516-1 일원	0.195	14	29	〃	〃
38		불은면 삼성리 294-3 일원	0.043	3	6	〃	〃
39		불은면 삼성리 1240 일원	0.066	5	10	〃	〃
40		불은면 삼성리 262 일원	0.038	3	6	〃	〃
41		불은면 삼성리 201-3 일원	0.061	5	9	〃	〃
42		불은면 삼성리 684 일원	0.111	9	17	〃	〃
43		불은면 삼성리 773 일원	0.194	14	30	〃	〃

44		불은면 삼성리 1027-42 일원	0.039	3	6	〃	〃
45		불은면 삼성리 1037 일원	0.024	2	4	기존공급	강화도
46		불은면 삼성리 1054-1 일원	0.053	3	5	〃	〃
47		불은면 삼성리 1006 일원	0.019	2	4	〃	〃
48		불은면 삼성리 1155 일원	0.024	2	4	〃	〃
49		불은면 삼성리 1222 일원	0.026	3	5	〃	〃
50		불은면 삼동암리 153 일원	0.180	14	27	〃	〃
51		불은면 삼동암리 1085-7 일원	0.071	5	11	〃	〃
52		불은면 삼동암리 230-1 일원	0.137	10	20	〃	〃
53		불은면 삼동암리 18-26 일원	0.019	2	3	〃	〃
54		불은면 삼동암리 1267 일원	0.042	3	6	〃	〃
55		불은면 삼동암리 323-2 일원	0.013	1	2	〃	〃
56		불은면 삼동암리 산35-2 일원	0.009	1	2	〃	〃
57		불은면 두운리 1248 일원	0.441	37	74	〃	〃
58		불은면 두운리 102-5 일원	0.081	5	10	〃	〃
59		불은면 두운리 329-1 일원	0.028	3	5	〃	〃
60		불은면 두운리 462-2 일원	0.060	4	8	〃	〃
61		불은면 두운리 389-4 일원	0.024	2	4	〃	〃
62		불은면 두운리 1026 일원	0.188	12	24	〃	〃
63		불은면 두운리 932-6 일원	0.027	2	4	〃	〃
64		불은면 두운리 888 일원	0.046	3	7	〃	〃
65		불은면 고능리 1374 일원	0.106	8	16	〃	〃
66		불은면 고능리 161-7 일원	0.040	3	6	〃	〃
67		불은면 고능리 1063 일원	0.020	2	3	〃	〃
68		불은면 오두리 707 일원	0.08	6	12	〃	〃
69		불은면 넙성리 469-1 일원	1.212	92	184	〃	〃
70		불은면 덕성리 712 일원	0.090	7	13	〃	〃
71		불은면 덕성리 971 일원	0.064	5	10	〃	〃

72		불은면 신현리 602-2 일원	0.974	74	148	〃	〃
73		불은면 신현리 산42-2 일원	0.452	35	69	기존공급	강화도
74		삼산면 상리 242 일원	0.657	62	111	신규수요	석모도
75		삼산면 하리 148 일원	0.886	85	153	〃	〃
76		삼산면 석모리 630 일원	2.35	225	405	〃	〃
77		삼산면 석포리 131 일원	2.189	210	378	〃	〃
78		삼산면 매음리 857 일원	4.807	459	827	〃	〃
79		선원면 창리 산 6 일원	0.184	23	59	기존공급	강화도
80		선원면 지산리 226 일원	0.881	111	286	〃	〃
81		선원면 연리 산 34-3 일원	0.784	99	253	〃	〃
82		선원면 연리 1052 일원	0.089	12	30	〃	〃
83		선원면 냉정리 산70-33 일원	0.546	71	181	〃	〃
84		선원면 냉정리 592-5 일원	0.714	91	233	〃	〃
85		선원면 선행리 264 일원	0.499	64	164	〃	〃
86		선원면 선행리 471-3 일원	0.471	60	154	〃	〃
87		선원면 창리 산170 일원	0.061	7	19	〃	〃
88		양도면 능내리 333 일원	0.388	23	46	〃	〃
89		양도면 하일리 247 일원	0.147	9	17	〃	〃
90		양도면 하일리 산106-12 일원	0.099	6	12	〃	〃
91		양도면 하일리 830 일원	0.019	1	2	〃	〃
92		양도면 하일리 47-18 일원	0.046	3	5	〃	〃
93		양도면 하일리 100-1 일원	0.035	2	4	〃	〃
94		양도면 하일리 37-10 일원	0.044	2	5	〃	〃
95		양도면 삼흥리 1110-1 일원	1.082	66	133	〃	〃
96		양도면 건평리 830 일원	0.099	6	12	〃	〃
97		양도면 건평리 171 일원	0.074	5	9	〃	〃
98		양도면 건평리 655-30 일원	0.005	1	1	〃	〃
99		양도면 인산리 800 일원	0.798	47	95	〃	〃

100		양사면 북성리 595-2 일원	1.179	150	375	〃	〃
101		양사면 철산리 11-12 일원	0.68	52	130	기존공급	강화도
102		양사면 덕하리 117-1 일원	2.655	340	850	〃	〃
103		송해면 당산리 305 일원	1.713	120	300	〃	〃
104		송해면 하도리 662 일원	4.67	170	425	〃	〃
105		화도면 덕포리 933-5 일원	0.085	5	9	〃	〃
106		화도면 덕포리 1639 일원	0.012	1	1	〃	〃
107		화도면 덕포리 1207-7 일원	0.037	2	4	〃	〃
108		화도면 덕포리 568-1 일원	0.015	1	2	〃	〃
109		화도면 덕포리 437-16 일원	0.106	6	11	〃	〃
110		화도면 덕포리 368-3 일원	0.013	1	1	〃	〃
111		화도면 덕포리 326-2 일원	0.030	2	3	〃	〃
112		화도면 덕포리 25 일원	0.028	2	3	〃	〃
113		화도면 덕포리 1057-1 일원	0.048	3	5	〃	〃
114		화도면 덕포리 1306-5 일원	0.065	4	7	〃	〃
115		화도면 사기리 884 일원	0.020	1	2	〃	〃
116		화도면 사기리 97-1 일원	0.026	2	4	〃	〃
117		화도면 사기리 377 일원	0.353	19	38	〃	〃
118		화도면 흥왕리 1259-8 일원	0.012	1	1	〃	〃
119		화도면 흥왕리 1254-5 일원	0.240	13	25	〃	〃
120		화도면 흥왕리 512-13 일원	0.018	1	2	〃	〃
121		화도면 흥왕리 821-13 일원	0.002	0	0	〃	〃
122		화도면 흥왕리 834 일원	0.016	1	2	〃	〃
123		화도면 흥왕리 1242-2 일원	0.067	4	7	〃	〃
124		화도면 흥왕리 798 일원	0.023	1	2	〃	〃
125		화도면 흥왕리 1236-6 일원	0.058	3	6	〃	〃
126		화도면 동막리 459 일원	0.14	8	16	〃	〃
127		화도면 여차리 139-1 일원	0.145	8	16	〃	〃

128		화도면 여차리 385-13 일원	0.310	15	32	〃	〃
129		화도면 여차리 821-11 일원	0.023	1	2	기존공급	강화도
130		화도면 여차리 641-8 일원	0.005	1	1	〃	〃
131		화도면 여차리 762-1 일원	0.002	1	1	〃	〃
132		화도면 여차리 1006-3 일원	0.014	1	1	〃	〃
133		화도면 여차리 925-3 일원	0.080	4	9	〃	〃
134		화도면 장화리 883-2 일원	0.122	6	13	〃	〃
135		화도면 장화리 1271 일원	0.018	1	2	〃	〃
136		화도면 장화리 148 일원	0.005	1	1	〃	〃
137		화도면 내리 2164-20 일원	0.018	1	2	〃	〃
138		화도면 내리 673-3 일원	0.219	12	23	〃	〃
139		화도면 내리 1320 일원	0.044	2	5	〃	〃
140		화도면 내리 122 일원	0.076	4	8	〃	〃
141		화도면 내리 250-1 일원	0.016	1	2	〃	〃
142		화도면 내리 169 일원	0.022	1	2	〃	〃
143		화도면 상방리 96-3 일원	0.102	6	11	〃	〃
144		화도면 상방리 755-4 일원	0.023	1	2	〃	〃
145		화도면 상방리 297-7 일원	0.075	4	8	〃	〃
146		화도면 문산리 658 일원	0.020	1	2	〃	〃
147		화도면 문산리 823-1 일원	0.122	7	13	〃	〃
148		화도면 문산리 42 일원	0.025	1	3	〃	〃
149		교동면 봉소리 940 일원	0.056	5	10	〃	교동도
150		교동면 상용리 820-1 일원	0.113	9	19	〃	〃
151		교동면 상용리 643 일원	0.306	25	51	〃	〃
152		교동면 읍내리 150 일원	0.199	16	33	〃	〃
153		교동면 대룡리 633 일원	0.167	10	20	〃	〃
154		교동면 동산리 101 일원	0.071	6	12	〃	〃
155		교동면 동산리 750 일원	0.158	13	27	〃	〃

156		교동면 서한리 707-5 일원	0.157	13	26	〃	〃
157		교동면 지석리 9 일원	0.09	10	20	기존공급	교동도
158		교동면 삼선리 366 일원	0.131	10	22	〃	〃
159		교동면 고구리 1169 일원	0.209	17	35	〃	〃
160		교동면 인사리 799 일원	0.022	15	30	〃	〃
161		하점면 이강리 912 일원	1.101	62	125	〃	강화도
162		하점면 창후리 835 일원	0.035	3	5	〃	〃
163		하점면 망월리 1884 일원	0.225	12	25	〃	〃
164		하점면 신삼리 221 일원	3.3	187	374	〃	〃
165		하점면 신봉리 430 일원	1.018	58	115	〃	〃
166		하점면 장정리 570 일원	2.398	136	272	〃	〃

2. 도면열람: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관할 수도사업소

사 업 소	대표전화번호	관할 구역	비고
중부수도사업소 (미추홀구 석정로 225)	720-3300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부수도사업소 (연수구 앵고개로 183)	720-3500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북부수도사업소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720-3600	부평구, 계양구	
서부수도사업소 (서구 서곶로 301번길 26)	720-3800	서구	
강화수도사업소 (길상면 온수리 마니산로 9)	720-3900	강화군	

3. 급수가능구역 개시일: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2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결정(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결정(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주요내용

○ 위 치: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번지 일원

○ 결정내용: 용도지역 미지정 → 보전관리지역(8,799.0㎡)

2. 열람(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14,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 강화읍 강화대로 394)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사무소(032-930-4326, 서도면 주문도1길 16)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7호선)사업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서구 원창동 433-1 ~ 서구 원창동 395-1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 명칭: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 ○ 사업면적: 65,714㎡

○ 사업규모: 도로개설 L=1.5㎞, B=35m(6차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8. 7.30. ~ 2021.12.31.

○ 변경: 2018. 7.30. ~ 2023.12.31.

○ 변경사유: 지장물 철거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2021.11. 1. ~ 2021.11.15.

○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관계 도서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032-440-3722), 종합건설본부(☏ 032-440-5225),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3)

10.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붙임 1. 용지조서 1부.

2. 지장물 조서 1부. 끝.

용지조서(변경 없음)

지 목 별 편 입 용 지 집 계 표 <총 괄> (변경없음)

지 목	합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비 고
	필 지	편입면적 (m2)	필 지	편입면적 (m2)	필 지	편입면적 (m2)	필 지	편입면적 (m2)	
답	5	2,052	2	184	3	1,868			
대	6	1,911	6	1,911	-	-			
임	14	15,695	8	7,548	6	8,147			
잡	33	17,182	25	12,772	8	4,410			
장	5	795	5	795	-	-			
도	12	26,007	2	358	10	25,649			
전	3	495	-	-	3	495			
구	1	89	-	-	1	89			
제	1	1,488			1	1,488			
합계(변경)	**80**	**65,714**	**48**	**23,568**	**32**	**42,146**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동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총면적 (m2)	편입면적 (m2)	잔여면적 (m2)	성 명	주 소	지분율	소 유 자	주 소	권 리 관 계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934	대	1515	1515	-	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283	잡	795.3	795.3	-	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937	도	2442.6	2442.6	-	농림축산식품부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37	잡	292.8	292.8	-	박**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번길, ** *동 ***호(만석동,만석아파트)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검단산업단지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검단산업단지지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7	도	561	561	-	농림축산식품부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935	제	1487.6	1487.6	-	농림축산식품부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9-7	구	89	89	-	국토교통부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9-8	잡	12	12	-	인천광역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16	임	1935	1935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임차권자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3	임	40	40	-	인천광역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29-15	임	2722	2722	-	인천광역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53-6	도	134	134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12	임	1729	1729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임차권자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13	임	1703	1703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임차권자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53-3	도	138	138	-	인천광역시						
1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53-5	도	224	224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총면적 (m2)	편입면적 (m2)	잔여면적 (m2)	성 명	주 소	지분율	소 유 자	주 소	권 리 관 계	
1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17	임	1709	1709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1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5	임	2238	2238	-	인천광역시						
1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 129-18	임	131	131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2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1	임	1202	12	1190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2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 129-14	임	317	317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2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7	임	2818	2818	-	인천광역시						
2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9-5	전	277	277	-	인천광역시						
2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9-6	잡	8	8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2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0-1	전	138	138	-	인천광역시						
2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0-3	잡	8	8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2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 129-19	임	12	12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2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8-2	전	80	80	-	인천광역시						
2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1	답	152	152	-	인천광역시						
3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9	잡	11	11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3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4	답	1528	1528	-	인천광역시						
3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7	잡	388	388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총면적 (m2)	편입면적 (m2)	잔여면적 (m2)	성 명	주 소	지분율	소 유 자	주 소	권 리 관 계	
3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2	임	305	305	-	인천광역시						
3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 129-10	임	24	24	-	인천광역시						
3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2	답	7	7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3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6	답	188	188	-	인천광역시						
3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15	잡	90	90	-	기획재정부						
3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8	답	177	177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3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5	도	486	486	-	국토교통부						
4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14	잡	12	12	-	기획재정부						
4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13	잡	100	7	93	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 (정자동)					
4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3-1	장	281	281	-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 (여의도동)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을지로*가) (강남대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자	
4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12	잡	31	31	-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 (여의도동)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을지로*가) (강남대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자	
4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23	도	111	111	-	국토교통부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총면적 (m2)	편입면적 (m2)	잔여면적 (m2)	성 명	주 소	지분율	소 유 자	주 소	권 리 관 계	
4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5	장	16759	229	16530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 (여의도동)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을지로*가) (강남대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자	
4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32	도	259	259	-	국토교통부						
4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11	잡	383	383	-	기획재정부						
4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7	잡	2813	8	2805	기획재정부						
4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16	잡	55	55	-	기획재정부						
5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10	잡	593	2	591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5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17	잡	7	7	-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삼성동)					
5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18	잡	7320	7320	-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5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27	장	61	61	-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 (여의도동)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을지로*가) (강남대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자	
5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14	장	6269	162	6107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5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28	장	62	62	-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5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13	잡	5054	109	4945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 (여의도동)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을지로*가) (강남대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자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총면적 (m2)	편입면적 (m2)	잔여면적 (m2)	성 명	주 소	지분율	소 유 자	주 소	권 리 관 계	
5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2	잡	927.4	927.4	-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5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	잡	277686.5	1370	276316.5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농협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충정로*가)	근저당권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임차권	
5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17	잡	8992	50	8942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에**************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지상권자	
6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31	잡	36	36	-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관 **층 (대치동,포스코센터)		에**************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지상권자	
6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26	잡	5	5	-	에**************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사관**층	지상권자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지상권자	
6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29	잡	4	4	-	에**************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주*****	서울 중구 장교동 *	지상권자	
6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30	잡	706	706	-	에**************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주*****	서울 중구 장교동 *	지상권자	
6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36	잡	3845.1	3845.1	-	해양수산부						
6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35	잡	19291.4	5	19286.4	해양수산부						
6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10	대	378.3	57	321.3	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					
6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516	도	9108.6	32	9076.6	인천광역시						
6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40	대	635.2	97.5	537.7	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회현동 *가)		신********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회현동*가)	근저당권자	
6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41	대	805.1	110.5	694.6	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회현동 *가)		신********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회현동*가)	근저당권자	
7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도	18910.7	18910.7	-	인천광역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총면적 (m2)	편입면적 (m2)	잔여면적 (m2)	성 명	주 소	지분율	소 유 자	주 소	권 리 관 계	
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잡	10733.7	444	10289.7	인*****	인천 중구 신흥동 *가 *-***					
7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519	도	18153.70	37	18116.7	인천광역시						
7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6	잡	3557.8	66	3491.8	에*********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번길 ***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가좌공단지점)	근저당권자	
7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51	대	650.3	44	606.3	아*******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가좌동)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가좌공단지점)	근저당권자	
7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23	잡	2017.2	46	1971.2	인*****	인천 중구 신흥동 *가 *-***					
7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21	잡	4856	123	4733	인*****	인천 중구 신흥동 *가 *-***					
7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2	대	92494.1	87	92407.1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 (여의도동)					
7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도	10553.6	2672	7881.6	인천광역시						
7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22	잡	380.8	1	379.8	인*****	인천 중구 신흥동 *가 *-***					
8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3	잡	21162.1	14	21148.1	인*****	인천 중구 신흥동 *가 *-***					

<지장물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단 위	합 계	비 고
부 속 건 물	계	동/㎡	4 / 24.0	
	창 고	동/㎡	1 / 10.0	
	화 장 실	동/㎡	1 / 2.0	
	경 비 초 소	동/㎡	1 / 4.0	
	자 전 거 보 관 대	동/㎡	1 / 8.0	
콘크리트건물		개/㎡	1 / 146.0	
컨 테 이 너		개/㎡	5 / 113	
전주	한전주	개	58	

<지장물 조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동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m2)	소 유 자		비 고
	시·군	구·읍	동·리					소 유 자	주 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2	컨테이너		55.0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 *** (삼**)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2	자전거보관대		8.0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 *** (삼**)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4	컨테이너		18.0	국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4	경비실	콘크리트	146	국	인천광역시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3-5	경비초소		4.0	국	국토교통부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18	컨테이너		13.0	포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 ***, ** ***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18	컨테이너		9.0	포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 ***, ** ***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18	창고		10.0	포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 ***, ** ***	
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화장실		2.0	국	인천광역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컨테이너		18.0	국	인천광역시	

한전주 조서 (1)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	방 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 고
	시·군	구·읍	동·리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1937		우측	8323Q 534 복합간 107	한국전력공사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1934		좌측	8323Q 531 복합간 107 R1	한국전력공사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1935		우측	8323Q 532 복합간 106 R1	한국전력공사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1935		중앙	8323Q 511 복합간 103	한국전력공사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1935		중앙	8323Q 513 복합간 103 L1	한국전력공사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1935		중앙	8323Q 501 복합간 103 L2	한국전력공사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15		우측	8323Q 503 복합간 103 L3	한국전력공사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15		우측	8323S 592 복합간 103 L4	한국전력공사	
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17		좌측	보 조 주	한국전력공사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5		우측	8323S 582 복합간 103 L5	한국전력공사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5	0+313.0	우측	미 확 인	한국전력공사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13	0+503.0	우측	미 확 인	한국전력공사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5	0+326.0	좌측	8323S 671 복합간 103 L5 L1	한국전력공사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7-4	0+424.0	우측	미 확 인	한국전력공사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0+886.0	우측	8332B 573 물류지	한국전력공사	
1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0+898.0	좌측	8322B 563 북항간 43 R31	한국전력공사	
1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0+905.0	우측	8332B 564 물류지 80	한국전력공사	
1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0+945.0	우측	8332B 551 물류지 81	한국전력공사	
1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0+962.0	좌측	보조주	한국전력공사	
2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29-5	1+085.0	우측	8332B 544 물류지 82	한국전력공사	

한전주 조서 (2)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	방 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 고
	시·군	구·읍	동·리						
2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010.0	좌측	8322B 541 북항간 43 R34	한국전력공사	
2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1+025.0	우측	8332B 532 물류지 83	한국전력공사	
2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050.0	우측	8322B 542 북항간 43 R35	한국전력공사	
2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1+066.0	우측	8322B 533 물류지 84	한국전력공사	
2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097.0	좌측	8322B 531 북항간 43 R36	한국전력공사	
2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1+107.0	우측	8322B 522 물류지 85	한국전력공사	
2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142.0	좌측	보조주	한국전력공사	
2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144.0	좌측	8322B 531 북항간 43 R37	한국전력공사	
2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1+146.0	우측	8322B 513 물류지 86	한국전력공사	
3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182.0	우측	보조주	한국전력공사	
3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1+184.0	우측	8322B 503 물류지 87	한국전력공사	
3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189.0	좌측	8322B 531 북항간 43 R38	한국전력공사	
3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1+228.0	우측	8322B 504 물류지 88	한국전력공사	
3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229.0	좌측	보조주	한국전력공사	
3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235.0	좌측	8322B 531 북항간 43 R39	한국전력공사	
3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9	1+266.0	우측	8322B 593 물류지 89	한국전력공사	
3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270.0	좌측	보조주	한국전력공사	
3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278.0	좌측	8322B 531 북항간 43 R40	한국전력공사	
3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21	1+318.0	우측	8322B 583 물류지 90	한국전력공사	
4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318.0	좌측	8322D 581 북항간 43 R41	한국전력공사	

한전주 조서 (3)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	방 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 고
	시·군	구·읍	동·리						
4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357.0	좌측	8322D 571 북항간 43 R42	한국전력공사	
4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21	1+358.0	우측	8322B 573 물류지 92	한국전력공사	
4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	1+395.0	좌측	8322D 561 북항간 43 R43	한국전력공사	
4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21	1+403.0	우측	8322B 574 물류지 93	한국전력공사	
4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439.0	좌측	8322D 562 북항간 43 R44	한국전력공사	
4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21	1+443.0	우측	8322D 563 물류지 94	한국전력공사	
4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485.0	좌측	8322D 551 북항간 43 R45	한국전력공사	
4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490.0	좌측	8322D 543 물류지 95	한국전력공사	
4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508.0	우측	8322D 545 물류지 96	한국전력공사	
5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518.0	우측	8322D 546 북항간 43 R47 R2	한국전력공사	
5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521.0	좌측	8322D 541 북항간 43 R46	한국전력공사	
5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559.0	우측	8322D 532 북항간 43 R47 R1	한국전력공사	
5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562.0	좌측	8322D 531 북항간 H3 R47	한국전력공사	
5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599.0	좌측	8322D 533 북항간 43 R47 R1 L1	한국전력공사	
5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607.0	좌측	8322D 521 북항간 43 R48	한국전력공사	
5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648.0	좌측	8322D 511 북항간 43 R49	한국전력공사	
5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665.0	좌측	8322D 612 북항간 43 R50 H1	한국전력공사	
5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5-19	1+687.0	좌측	8322D 611	한국전력공사	
	계						5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2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소재지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청우네이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150호)	박형진, 이재호	1998. 12. 3.	소재지 변경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237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A동 301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10. 26.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제2021-0-인천광역시-19호	인천범시민 환경대책위원회	이성순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47-1, 1층	o 푸르고 깨끗한 인천 환경생태(대기, 수질, 토양) 유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 o 환경 보전, 교육, 홍보 등의 활동	2021.10.26.	신규 등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6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29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녹지)

○ 명칭: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조성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1,569.1㎡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송옥섭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20, 2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작성생략(열람장소 비치)】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5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032-770-6212, 동구 금곡로 67)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별첨】

일련번호	소재지(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비고
1	송림동	8-33	대	119.0	1.2	윤진엽	
2	송림동	8-287	대	4.0	4.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	
3	송림동	8-288	대	42.0	42.0	김성진	
4	송림동	8-290	대	7.0	7.0	인천광역시	
5	송림동	8-291	도	52.0	52.0	인천광역시 동구	
6	송림동	8-295	대	2.0	1.7	인천광역시	
7	송림동	8-297	대	2.0	2.0	인천광역시	
8	송림동	8-298	대	89.0	89.0	주식회사하이좋은인슈	
9	송림동	8-299	대	129.0	71.5	김창근	
10	송림동	8-300	대	142.0	104.5	김회낙	
11	송림동	8-310	대	60.0	30.7	인천광역시 동구	
12	송림동	8-340	대	120.0	8.1	김정의	
13	송림동	8-447	대	7.0	7.0	김창수	
						윤성근	
						강신홍	
						최진희	
						최영식	
						홍봉균	
14	송림동	8-672	도	11.0	10.9	김정숙	
						장민정	
						인천광역시	
15	송림동	8-675	도	213.0	46.8	김정숙	
						장민정	
						인천광역시	
16	송림동	8-676	대	7.0	2.3	인천광역시 동구	
17	송림동	8-684	대	4.0	0.1	인천광역시 동구	
18	송림동	8-756	대	18.0	18.0	인천광역시	
19	송림동	8-757	도	40.0	40.0	인천광역시 동구	
20	송림동	8-759	대	24.0	8.3	인천광역시	
21	송림동	8-760	대	41.0	41.0	인천광역시	
22	송림동	8-761	대	5.0	5.0	인천광역시	
23	송림동	8-762	대	55.0	55.0	인천광역시	
24	송림동	8-763	대	4.0	4.0	인천광역시	
25	송림동	8-764	도	11.0	11.0	인천광역시	
26	송림동	16-5	대	296.0	125.4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성아영	
27	송림동	32-1	대	3,274.3	682.0	기획재정부 외 75인	
28	송림동	32-252	대	98.6	98.6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성아영	
합 계					1,569.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39호

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260(2021. 6. 7.)호로 공고·열람한 **도시관리계획(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열람합니다.

2021. 11. 1.

인 천 광 역 시 장

1. 항동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변경 주요내용

가. 재공고 · 열람 사유

- 주민의견청취 결과 반영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반영 등
- 2021년 제6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나. 변경 주요내용

1) 공동개발(권장) 필지 조정

- “항동7가 50, 50-2, 49-13” 중 “항동7가 49-13” 제외

2) 항동7가 52-2번지의 건축한계선 “4m → 2m” 로 변경

3) 주차장 허용용도 변경

4) 항동7가 58-176, 58-168번지 건축한계선 4m 부분에 공공조경 배치

5) “최소개발규모” 를 “필지분할 최소면적” 으로 변경

6) 일반상업지역 I-1블럭 높이에 “최저 2층” 을 추가

7) 전면공지 등에 관한 계획 중 공개공지 부분에 “필로티 구조 설치 금지” 추가

8)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 내용 중 “공동개발 계획 중 지정과 권장 간의 상호 변경에 관한 사항” 삭제

9) 저층배치구간 중 항동7가 108-3번지 제외

10)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진출입불허구간 변경 등

2. 열람기간・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 032-440-462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 ☎032-760-7517, 중구 신포로27번길 80)

다.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641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공고 · 열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26번지 일원(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623,856.4㎡(인천아시아드경기장) 중 4,640㎡

○ 규 모

- 국민체육센터: 건축면적 1,723.74㎡ / 연면적 4,049.19㎡,
- 주차장: A=2,83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구분	
1	서구 연희동	826	체	567,796.3	567,796.3	인천광역시		
합계	총 계			567,796.3	567,796.3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8.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032-440-1713,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4층)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4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소재지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경에스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8호)	윤학상	2004. 3. 17.	소재지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M동 1903호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S동 2402호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2654호

도시계획시설(관청근린공원 1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관청근린공원 1단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48), 강화군청 산림공원과(☎ 032-930-3467)에 비치하였습니다.

2021. 11.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2) 명 칭 : 관청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관청 근린공원	도시 공원	138,174	-	82,661	55,513	1972.08.23. (건고 380호)
변경	관청 근린공원	도시 공원	107,486		82,661	24,825	1972.08.23. (건고 380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이외 권리의 명세서: 붙임 (변경)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강화군청 산림공원과

붙임 토지조서 1부. 끝.

□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구(군)	동(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계						82,661	82,661							
1	기정	강화군	관청리	51	전	1,375	1,375	강화군						
	변경	〃	〃	51	전	1,375	1,375	강화군						
2	기정	〃	〃	51-1	전	202	202	강화군						
	변경	〃	〃	51-1	전	202	202	강화군						
3	기정	〃	〃	53	과수원	3,470	3,470	강화군						
	변경	〃	〃	53	과수원	3,470	3,470	강화군						
4	기정	〃	〃	54-1	전	19	19	정○익	강화읍 관청리 ○					
	변경	〃	〃	54-1	전	19	19	강화군						
5	기정	〃	〃	55-1	전	883	883	전○록	강화읍 관청리 ○					
	변경	〃	〃	55-1	전	883	883	강화군						
6	기정	〃	〃	55-3	전	398	398	안○철	서울시 도봉구 ○					
	변경	〃	〃	55-3	전	398	398	강화군						
7	기정	〃	〃	56	전	3,821	3,821	임○신	인천 서구 마전동 ○		○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변경	〃	〃	56	전	3,821	3,821	강화군						
8	기정	〃	〃	57-1	전	1,516	1,516	박○호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					
	변경	〃	〃	57-1	전	1,516	1,516	강화군						
9	기정	〃	〃	68-23	전	12	12	조○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					
	변경	〃	〃	68-23	전	12	12	강화군						
10	기정	〃	〃	68-24	임야	1,232	1,232	손○수	선원면 신정리 ○	1/4				
								신○경	선원면 신정리 ○	1/4				
								손○희	강화읍 강화대로248번길 ○	1/4				
								이○옥	강화읍 강화대로248번길 ○	1/4				
	변경	〃	〃	68-24	임야	1,232	1,232	강화군						
11	기정	〃	〃	71-2	전	797	797	나○순	강화읍 옥림리 ○					
	변경	〃	〃	71-2	전	797	797	강화군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구(군)	동(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2	기정	〃	〃	71-4	전	2,299	2,299	나○순	강화읍 옥림리 ○					
	변경	〃	〃	71-4	전	2,299	2,299	강화군						
13	기정	〃	〃	72	전	2,321	2,321	이○전	강화읍 동문로 ○					
	변경	〃	〃	72	전	2,321	2,321	강화군						
14	기정	〃	〃	73	전	1,302	1,302	안○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 ○	1/10				
								안○숙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2길 ○	1/10				
								안○중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8/10				
	변경	〃	〃	73	전	1,302	1,302	강화군						
15	기정	〃	〃	74	전	304	304	장○계	강화읍 신문리○					
	변경	〃	〃	74	전	304	304	강화군						
16	기정	〃	〃	75	전	1,098	1,098	안○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 ○	1/10				
								안○숙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2길 ○	1/10				
								안○중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8/10				
	변경	〃	〃	75	전	1,098	1,098	강화군						
17	기정	〃	〃	82-1	대	9	9	김○자	강화읍 대월로 ○					
	변경	〃	〃	82-1	대	9	9	강화군						
18	기정	〃	〃	82-2	대	81	81	김○자	강화읍 대월로 ○					
	변경	〃	〃	82-2	대	81	81	강화군						
19	기정	〃	〃	83-1	대	355	355	김○자	강화읍 대월로 ○					
	변경	〃	〃	83-1	대	355	355	강화군						
20	기정	〃	〃	83-2	대	228	228	강화군						
	변경	〃	〃	83-2	대	228	228	강화군						
21	기정	〃	〃	83-3	대	893	893	강화군						
	변경	〃	〃	83-3	대	893	893	강화군						
22	기정	〃	〃	83-4	대	241	241	김○태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10길 ○	1/3				
								김○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	1/3				
								김○자	서울시 은평구 진관3로 ○	1/3				
	변경	〃	〃	83-4	대	241	241	강화군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구(군)	동(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23	기정	〃	〃	83-6	전	133	133	김○자	강화읍 대월로 ○					
	변경	〃	〃	83-6	전	133	133	강화군						
24	기정	〃	〃	83-7	전	207	207	김○자	강화읍 대월로 ○					
	변경	〃	〃	83-7	전	207	207	강화군						
25	기정	〃	〃	84-1	대	263	263	한○분	강화읍 관청리 ○		○단위농업협동조합		지상권	
	변경	〃	〃	84-1	대	263	263	강화군						
26	기정	〃	〃	85-2	대	777	777	강화군						
	변경	〃	〃	85-2	대	777	777	강화군						
27	기정	〃	〃	85-3	전	987	987	김○자	강화읍 대월로 ○					
	변경	〃	〃	85-3	전	987	987	강화군						
28	기정	〃	〃	90-1	전	175	175	안○자	강화읍 관청리 96					
	변경	〃	〃	90-1	전	175	175	강화군						
29	기정	〃	〃	90-8	전	58	58	최○자	불은면 삼동암리 산301					
	변경	〃	〃	90-8	전	58	58	강화군						
30	기정	〃	〃	91	묘지	926	926	구○서	강화읍 관청리 94					
	변경	〃	〃	91	묘지	926	926	강화군						
31	기정	〃	〃	92	전	1,607	1,607	안○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 ○	1/10				
								안○숙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2길 ○	1/10				
								안○중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8/10				
	변경	〃	〃	92	전	1,607	1,607	강화군						
32	기정	〃	〃	93	대	625	625	임○규	강화읍 관청리 ○		구○서		가처분	
	변경	〃	〃	93	대	625	625	강화군						
33	기정	〃	〃	94	전	463	463	구○서	강화읍 관청리 ○					
	변경	〃	〃	94	전	463	463	강화군						
34	기정	〃	〃	94-1	전	298	298	임○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변경	〃	〃	94-1	전	298	298	강화군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구(군)	동(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35	기정	〃	〃	94-2	전	436	436	김○자	강화읍 관청리 ○					
	변경	〃	〃	94-2	전	436	436	강화군						
36	기정	〃	〃	95-1	전	638	638	안○자	강화읍 관청리 ○					
	변경	〃	〃	95-1	전	638	437	강화군						
37	기정	〃	〃	96	대	551	551	안○자	강화읍 관청리 ○					
	변경	〃	〃	96	대	551	551	강화군						
38	기정	〃	〃	96-33	잡종지	9	9	국(경찰청)						
	변경	〃	〃	96-33	잡종지	9	9	국(기획재정부)						
39	기정	〃	〃	96-34	전	1,661	1,661	안○자	강화읍 관청리 ○					
	변경	〃	〃	96-34	전	1,661	1,661	강화군						
40	기정	〃	〃	998-1	구거	33	33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	998-1	구거	33	33	국(농림축산식품부)						
41	기정	〃	〃	998-2	구거	115	115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	998-2	구거	115	115	국(농림축산식품부)						
42	기정	〃	〃	산1-9	임야	976	976	황○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변경	〃	〃	산1-9	임야	976	976	강화군						
43	기정	〃	〃	산1-10	임야	14	14	황○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변경	〃	〃	산1-10	임야	14	14	강화군						
44	기정	〃	〃	산1-11	임야	3,748	3,748	최○분	남동구 간석동 ○					
	변경	〃	〃	산1-11	임야	3,748	3,748	강화군						
45	기정	〃	〃	산2	임야	298	298	하본○	강화읍 신문리 ○					
	변경	〃	〃	산2	임야	298	298	강화군						
46	기정	〃	〃	산3-3	임야	8,128	8,128	안○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	1/2				
								안○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	1/2	양천세무서		근저당권	
	변경	〃	〃	산3-3	임야	8,128	8,128	강화군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구(군)	동(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47	기정	〃	〃	산4	임야	595	595	전○남	갑곳리 ○					
	변경	〃	〃	산4	임야	595	595	강화군						
48	기정	〃	〃	산5	임야	298	298	이○식	신문리					
	변경	〃	〃	산5	임야	298	298	강화군						
49	기정	〃	〃	산6	임야	83	83	이○업						
	변경	〃	〃	산6	임야	83	83	강화군						
50	기정	〃	〃	산7	임야	198	198	강○희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27길 ○					
	변경	〃	〃	산7	임야	198	198	강화군						
51	기정	〃	〃	산8-3	임야	11,142	11,142	임○영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	119/132				
								반○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	13/132				
	변경	〃	〃	산8-3	임야	11,142	11,142	강화군						
52	기정	〃	〃	산9-2	임야	298	298	김○태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10길 ○	1/3				
								김○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	1/3				
								김○자	서울시 은평구 진관3로 ○	1/3				
	변경	〃	〃	산9-2	임야	298	298	강화군						
53	기정	〃	〃	산10-2	임야	992	992	김○자	강화읍 관청리 ○					
	변경	〃	〃	산10-2	임야	992	992	강화군						
54	기정	〃	〃	산11-1	임야	2,821	2,821	안○희	강화읍 관청리 ○	1/17	○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장○	남구 소성로350번길 ○	16/17				
	변경	〃	〃	산11-1	임야	2,821	2,821	강화군						
55	기정	〃	〃	산15-1	임야	1,055	1,055	임○규	강화읍 관청리 ○					
	변경	〃	〃	산15-1	임야	1,055	1,055	강화군						
56	기정	〃	〃	산22-1	임야	8,883	8,883	안○중	서울 중랑구 망우동 ○		서인천세무서		근저당권	
	변경	〃	〃	산22-1	임야	8,883	8,883	강화군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구(군)	동(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57	기정	〃	〃	산23	임야	3,741	3,741	이○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은행 주식회사		근저당권	
	변경	〃	〃	산23	임야	3,741	3,741	강화군						
58	기정	〃	〃	산23-1	임야	6,573	6,573	신○숙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					
	변경	〃	〃	산23-1	임야	6,573	6,573	강화군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6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7호선, 대1-20호선, 대3-112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7호선, 대1-20호선, 대3-112호선) 사업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만수동, 수산동, 서창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3-7호선, 대로1-20호선, 대3-112호선)

○ 명칭: 인천 서창(2)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없음)

노선명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광로3-7호선	40~45	350	4,646	대2-14 (용현동)	운연동 (시흥시계)	1차로 확장
대로1-20호선	35~40	550	1,270	광3-7 (만수동)	논현동시계	1차로 확장
대로3-112호선	25	1,550	56,573	대1-20 (수산동)	서창2구역계	신설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0. 4.26. ~ 2016. 7.31.

○ **변경: 2010. 4.26. ~ 2022.12.31.**

○ 변경사유: 지적공부 정리 및 공사완료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8.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3),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906)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광로3-7호선												
26	기정	남동구 운연동	57-4	도	18	18	최**	인천광역시 **구 **동 ***				미보상
대로3-112호선(수산동)												
103	변경	남동구 만수동	770-10	도	15	15	국	국토해양부				신규
104	변경	남동구 만수동	770-11	도	45	45	국	국토해양부				신규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421호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에서 제2020-258호(2020. 06. 29.), 제2020-430호(2020.12.07.),제2021-172호(2021.06.07.) 하천(운연천)공사 시행계획 수립고시에 따라 시행하는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01.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운연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나.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67 ~ 서창동 810번지(시흥시 시계)

다. 사업규모 : 하도정비 L=2.69㎞(B=4~30m → 7~38m)

- 계획하폭 B=7~38m, 교량3개소, 제방보강 등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수임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토지 (12필지)	495-4, 195-41, 195-37, 195-25, 494-3, 173-4, 174-2, 183, 184, 185-1, 186, 489-73(분할전 489-22)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물건조서(지장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3.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열 람 기 간 : 2021. 11. 01.(월) ~ 11. 16.(화)

나.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보상팀(☎ 032-440-5168)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재하수과(☎ 032-453-8412)

다.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장소에 비치된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보상시기 : 2021. 12월 중순 이후 보상협의 예정(추후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의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2인으로 함)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보상협의요청→보상계약체결→소유권 이전 등기 및 보상금 지급(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 신청 후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안내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안내를 대신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 착수 시기에 공지할 예정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32-440-5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연번	소재지	기존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기존면적 (㎡)	분할후 면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남동구 운연동	495-4	495-4	하천	45	45	45	자연녹지지역	1	/	1	국(기획재정부)					
2	남동구 운연동	195-41	195-41	답	17	17	17	자연녹지지역	1	/	1	국(기획재정부)					
3	남동구 운연동	195-37	195-37	답	50	50	50	자연녹지지역	1	/	1	국(기획재정부)					
4	남동구 운연동	195-25	195-25	답	149	149	149	자연녹지지역	1	/	1	국(기획재정부)					
5	남동구 운연동	494-3	494-3	하천	626	626	626	자연녹지지역	1	/	1	국(기획재정부)					
6	남동구 운연동	173-4	173-4	답	183	183	183	자연녹지지역	1	/	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				
7	남동구 운연동	174-2	174-2	답	82	82	82	자연녹지지역	1	/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				
8	남동구 운연동	183	183	전	320	320	320	자연녹지지역	1	/	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				
9	남동구 운연동	184	184	전	115	115	115	자연녹지지역	1	/	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				
10	남동구 운연동	185-1	185-1	답	231	231	231	자연녹지지역	1	/	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				
11	남동구 운연동	186	186	답	31	31	31	자연녹지지역	1	/	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				
12	남동구 운연동	489-22	489-73	전	3,102	480	480	자연녹지지역	1	/	1	고 * *	인천 남구 선학동 350 금호아파트 *동 13**호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3호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하여 운영

나. 구성(안 제4조)

-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
-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

다.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으로 편성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지역대책본부장과 단장의 정보 공유 및 보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우표(전화:032-440-2443, 전자메일:goldstamp@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 메뉴)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관 군·구 지원단의 위치

2. 소관 군·구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천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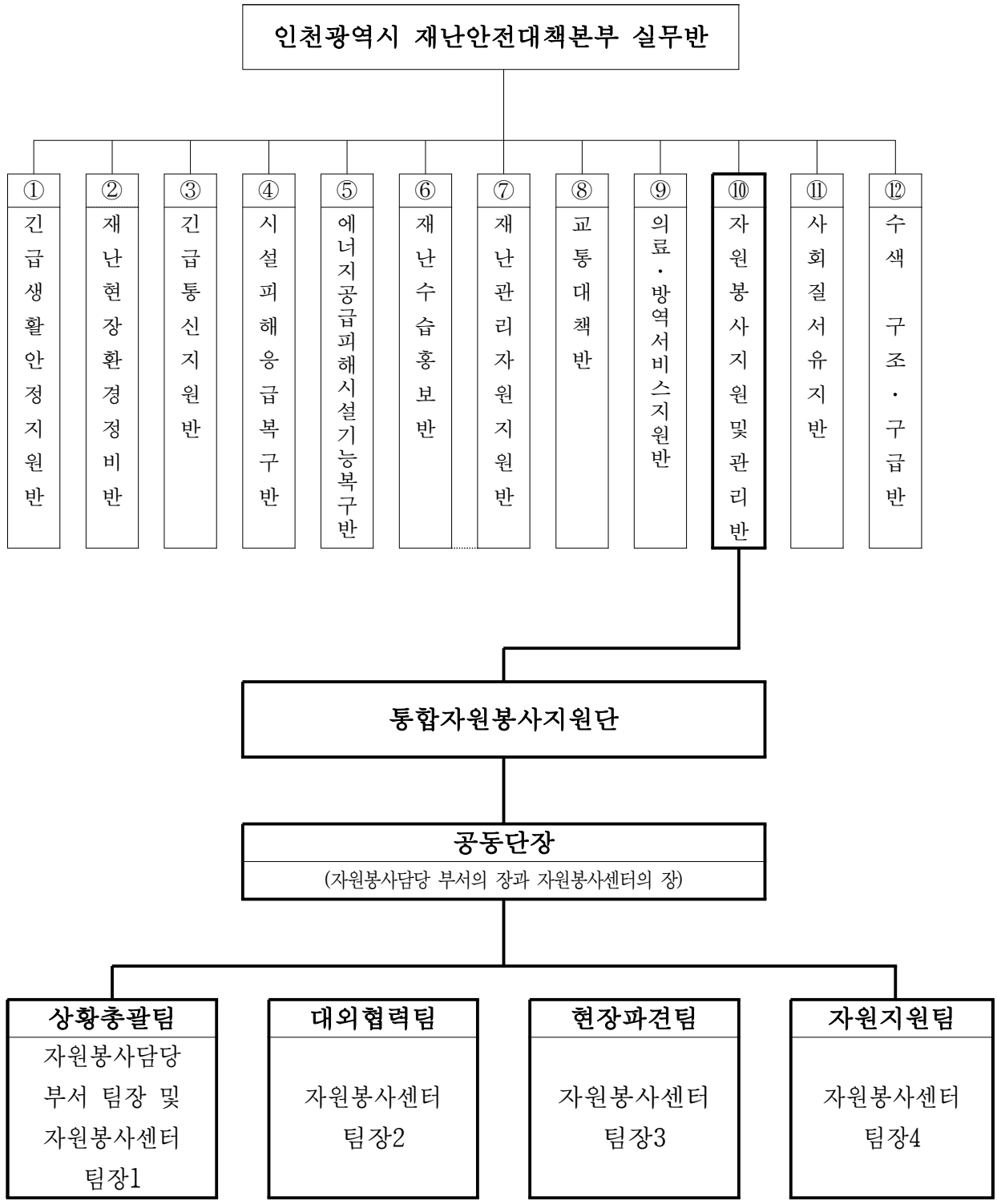

[별표2]

인천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구 성	업 무
상황 총괄팀	· 팀장 : 자원봉사담당 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팀장1 · 팀원 :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대본 보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 군구와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 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2 · 팀원 :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 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 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3 · 팀원 :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군구 지원단 파견 · 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
자원 지원팀	· 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4 · 팀원 : 자원봉사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 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5호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의 먹거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천광역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농축산유통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지웰시티푸르지오 오피스동 15층 농축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성길(전화번호 032-440-4372, 팩스번호 032-440-8663, 전자메일 smr220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인천광역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부, 국내 및 국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정책의 시행 및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계획

3. 먹거리 정책의 추진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계획의 실행방안

2. 전년도 이행계획의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3.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추진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정책 추진 및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인천광역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4.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범사례 개발 제안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6.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 1명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먹거리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과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으로 한다) 중 호선된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9. 1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강 승 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46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21.9.30. 시행)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 중복된 내용 삭제

2. 주요내용

가. [별표] 기타 시설사용료 등 ※ 비고 1. 50% 감면 대상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영종관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전화 : 032-453-7712, 팩스 : 032-440-8833, 전자메일 : posilposi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타 시설 사용료 등(제3조 관련)

1.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비고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 2회 기준)	12세 이하	28,000	■ 강습일 외 자유 수영 이용시 일일 입장료 적용
	13세 이상 19세 미만	30,000	
	19세 이상	36,000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 3회 기준)	12세 이하	38,000	
	13세 이상 19세 미만	44,000	
	19세 이상	54,000	
월간 자유수영 (주 5회)	12세 이하	-	■ 이용일(월~금) ■ 1일 1회 이용 ■ 지정 시간이용
	13세 이상 19세 미만	35,000	
	19세 이상	40,000	
일일입장	12세 이하	2,000	
	13세 이상 19세 미만	3,000	
	19세 이상	4,000	

2. 헬스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13세 이상 19세 미만(월간이용)	32,000
19세 이상(월간이용)	37,000

3. 에어로빅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13세 이상 19세 미만(월간이용, 주 3회)	24,000
19세 이상(월간이용, 주 3회)	30,000

4. 다목적실 문화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건강·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 1회 기준) ※재료비 개인부담	12세 이하	10,000
	13세 이상 19세 미만	12,000
	19세 이상	15,000

※ 비 고

① **10% 감면 대상** :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② 같은 기간 내 2종목 이상 수강 시 해당 기준 수강료의 20% 할인
단, 그 밖의 할인자에 대하여 중복할인 불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생 략)	[별표] (현행과 같음)
1. 50%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독립, 민주, 특수임무,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삭 제>
2. 10% 감면 대상 :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① 10% 감면 대상 :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3. 같은 기간 내 2종목 이상 수강 시 해당 기준 수강료의 20% 할인 단, 그 밖의 할인자에 대하여 중복할인 불가	② 같은 기간 내 2종목 이상 수강 시 해당 기준 수강료의 20% 할인 단, 그 밖의 할인자에 대하여 중복할인 불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21.9.30. 시행)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36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청사의 시설물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민들과 소속 시의원들이 광폭적인 시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려는 것임. 또한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지정된 용도를 삭제하고 과도한 사용 제한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책 소통 참여권 보장 및 진정한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설사용 가능 여부 검토 등 소모적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나. 대상시설물에 불필요한 용도를 삭제함으로써 유연한 사용을 기반으로 시설물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호, 제2호, 제4호)

다. 국정 및 시정활동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최소한의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청사 개방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2, 이메일 proxi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32-440-62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핑룸)
3. 본관 4층 자료실
4. 별관 세미나실

제6조제1호 중 “중인 경우”를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 전시회 등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각종회의 3. 본관 4층 자료실 4. 별관 2층, 3층, 4층, 5층, 6층 세미나실 : 강연·토론회 등 각종회의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핑룸) 3. (현행과 같음) 4. 별관 세미나실
제6조(사용의 제한) (생 략) 1. 의회 회기 중인 경우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제6조(사용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군·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7. (생 략)	5. ~ 7.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집행부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의원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36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신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굴포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6-141번지 외 6필지
- 면 적 : 29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하천수질자동측정을 위한 관로 설치
- 내 역 : 하천수 채수관로 설치 : ■ 스테인레스관 D25 L=54m, D50 L=26m
■ 열선관 D3 L=108m(54*2열), ■ 전선관 20A L=211m,
■ 피해방지휀스(메쉬,H=1.8) L=61m

5. 점용기간 : 2021.10.22. ~ 2026.12.31.

6. 공사기간 : 2021.10.22. ~ 2021.12.31.